

일본_Glyceryl caprylate 개정

3. 대상식품 :

- 식육 및 식육 부속물
- 어류 및 갑각류, 연체 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 동물
- 유제품, 새의 알 및 천연 꿀
- 동물 유래 제품
- 식용 야채 및 특정 뿌리 및 괴경
- 식용 과일 및 견과류, 감귤 / 멜론 껍질
- 커피, 홍차, 메이트 및 향신료
- 곡물
- 지질 과실, 잡곡류, 종자 및 과실
-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
- 카카오 및 카카오 혼합물

6. 다음의 농약을 식품 위생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물질로 지정하는 것 (면제 대상이라고도 함)

살충제 : Glyceryl caprylate

11. 시행일 : 2019. 1. 22